

# 약관

부부금슬보험 | 재무부보일1223-7('82. 1. 6)인가  
 암사망특약 | 교보계상2213-130('89. 8. 28)변경  
 유가족상속특약  
 재해상해특약 : 동아계리230-99('88. 9. 9)신고

## 장수축하금부 연금설계 부부금슬보험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1번지 대표전화 737-2233

 **대한교육보험**

(인쇄일자 : '89. 10)

## 인사말씀

이 땅에 교육보험의 씨를 뿌린 저희 대한교육보험을 항상 성원해 주시는 계약자 여러분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한교육보험은 계약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계약자 이익배당을 실시하는 국내에서 가장 내실있고 세계에서든 앞서가는 생명보험회사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저희 대한교육보험은 이러한 튼튼한 내실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계약자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배당으로 되돌려드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가꾸고 지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 목

## 차

|                             |    |
|-----------------------------|----|
| ● 유의사항 .....                | 2  |
| ● 주요 보험용어 설명 .....          | 3  |
| ● 상품구성 및 지급예시 .....         | 4  |
| ● 약관 주요내용 설명 .....          | 6  |
| 1. 계약의 효력 .....             | 6  |
| 2. 계약의 무효 .....             | 6  |
|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7  |
| 4. 가입자가 회사에 계약전 알릴 의무 ..... | 7  |
| 5. 주소 변경 통지 .....           | 8  |
| 6.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계약의 효력 ..... | 8  |
| 7. 보험금 등 지급절차 .....         | 9  |
| 8. 계약내용의 변경 .....           | 9  |
| ● 생명보험과 세제안내 .....          | 10 |
| ● 부부금슬보험(2종)약관 .....        | 12 |
| ● 부부금슬보험 암사망특약 약관 .....     | 28 |
| ● 부부금슬보험 유가족 상속특약 약관 .....  | 35 |
| ● 재해상해특약 약관 .....           | 39 |
| ● 신체부위 설명도 .....            | 47 |

## 유의사항



본 약관은 보험계약자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한 제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꼭 읽어보시고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서상의 주소, 성명 등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건강상태나 직업 등 회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3. 생명보험은 은행예금과 달라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시면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험계약에 관한 상담은 본사의 보험상담부나 가까운 총국 또는 영업국,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보험용어 설명

- **보 험 약 관** : 계약의 성립부터 만기시까지의 계약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통 보험약관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 계 약 과 특 약** : 보험약관중 보통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내용을 주계약이라 하며, 주계약의 보장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계약과 다른 특별한 약속을 기재하여 주계약에 부가하는 계약내용을 특약이라 함.
- **보 험 증 권** : 계약의 성립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계약증서
- **보 험 계 약 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 사람
- **(주) 피 보 험 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생사등이 보험의 대상이 됨.
- **보 험 수 익 자** : 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 **보 험 기 간** : 보험회사가 보장을 행하는 기간으로,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시작됨.
- **책 임 개 시 일** : 계약상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
- **계 약 일** : 통상계약 체결시의 책임개시일과 같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날을 계약일로 함.
- **계 약 해 당 일** : 계약후의 보험기간중에 정기적으로 도래하는 계약일의(월 단위의 경우에는 매월) 해당일
- **책 임 준 비 금** : 장래의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에서 적립되는 적립금
- **해 약 환 급 금**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 상품구성 및 지급예시

### 1. 상품구성 및 코드

이 보험은 부부금슬보험 2종(1)+부부금슬보험 암사망특약(1.9)  
+ 부부금슬보험유가족상속특약(1)+재해상해특약(1)로 조합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안의 숫자는 조합비율임

| 구 분       | 10 년 플 랜 |         | 종 신 플 랜 |         |
|-----------|----------|---------|---------|---------|
|           | 남        | 여       | 남       | 여       |
| 45세 지급 개시 | 3920-06  | 3921-06 | 3960-06 | 3961-06 |
| 50세 지급 개시 | 3922-06  | 3923-06 | 3962-06 | 3963-06 |
| 55세 지급 개시 | 3924-06  | 3925-06 | 3964-06 | 3965-06 |
| 60세 지급 개시 | 3926-06  | 3927-06 | 3966-06 | 3967-06 |
| 65세 지급 개시 | 3928-06  | 3929-06 | 3968-06 | 3969-06 |
| 70세 지급 개시 | 3930-06  | 3931-06 | 3970-06 | 3971-06 |

8P1000P0 435

### 2. 보험금지급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주피보험자 기준 |         | 지 급 내 용                                                                                                                                                                                                                                                                                                                                                           | 지 급 기 간 | 비 고   |         |     |     |     |     |       |       |       |       |         |                                              |                                                                                                         |
|----------|---------|-------------------------------------------------------------------------------------------------------------------------------------------------------------------------------------------------------------------------------------------------------------------------------------------------------------------------------------------------------------------|---------|-------|---------|-----|-----|-----|-----|-------|-------|-------|-------|---------|----------------------------------------------|---------------------------------------------------------------------------------------------------------|
| 생존 시     | 부부 생존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인 생존연금<br/>매년 150만원</li><li>※ 연금개시후 1인생존시 90만원씩 정액지급</li><li>● 장수축하금 지급</li></ul> <table border="1"><thead><tr><th>연 령</th><th>60세</th><th>70세</th><th>77세</th><th>88세</th><th>99세</th></tr></thead><tbody><tr><td>축하금</td><td>100만원</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1,000만원</td></tr></tbody></table> | 연 령     | 60세   | 70세     | 77세 | 88세 | 99세 | 축하금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생존연금지급 개시후 종신까지 (10년형 은 생존 연금 개시 후 10년 만 지급) | ※ 연금지급개시전 일시금 선택 가능<br>※ 생존연금 개시후 부부 모두 사망시 1인 생존연금을 10차년도까지 보장 지급<br>※ 60세의 장수 축하금은 만57세이하 가입자에 한하여 지급 |
|          | 연 령     | 60세                                                                                                                                                                                                                                                                                                                                                               | 70세     | 77세   | 88세     | 99세 |     |     |     |       |       |       |       |         |                                              |                                                                                                         |
| 축하금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     |     |     |       |       |       |       |         |                                              |                                                                                                         |
|          | 1인 생존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인 생존연금<br/>매년 90만원</li><li>● 장수축하금 지급(주피보험자 생존시)</li></ul> <table border="1"><thead><tr><th>연 령</th><th>60세</th><th>70세</th><th>77세</th><th>88세</th><th>99세</th></tr></thead><tbody><tr><td>축하금</td><td>100만원</td><td>200만원</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1,000만원</td></tr></tbody></table>                        | 연 령     | 60세   | 70세     | 77세 | 88세 | 99세 | 축하금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                                                                                                         |
| 연 령      | 60세     | 70세                                                                                                                                                                                                                                                                                                                                                               | 77세     | 88세   | 99세     |     |     |     |     |       |       |       |       |         |                                              |                                                                                                         |
| 축하금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입원 시       | ● 보험료 납입면제            |                                                          |        |        | 보험료 납입기간중   | —                                            |                                                                                                          |
|            | 입원일수                  | 4~30일                                                    | 31~60일 | 61~90일 |             |                                              | 91일이상                                                                                                    |
| 재해장해 시     | ● 재해장해급여금             |                                                          |        |        | 생존 연금 지급개시전 | —                                            |                                                                                                          |
|            | 2급                    | 3급                                                       | 4급     | 5급     |             |                                              | 6급                                                                                                       |
|            | 7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                                                                                                          |
|            | ● 보험료 납입면제 (2~3급 장해시) |                                                          |        |        |             |                                              |                                                                                                          |
| 사망·고도의장해 시 | 암사망 시                 | ● 사망보험금 2,000만원                                          |        |        |             | ● 사망보험금 은 생존 연금 지급개시전<br>● 유족연금은 사고 후부터 종신까지 | ※ 종피보험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00만원 지급<br>※ 연금 지급 개시전 일시금 선택가능<br><br>※ 유족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 사망시 생존 연금지급개시연령 + 10세 까지 보장 지급 |
|            |                       | ● 유가족 상속자금 1,000만원<br>· 연금개시전 사망시 생존연금 개시 연령의 계약 해당일에 지급 |        |        |             |                                              |                                                                                                          |
|            |                       | ● 유족연금<br>매년 90만원                                        |        |        |             |                                              |                                                                                                          |
|            | 재해인 경우                | ● 보험료 납입면제                                               |        |        |             |                                              |                                                                                                          |
| 일반인 경우     |                       | ● 사망보험금 1,000만원                                          |        |        |             |                                              |                                                                                                          |
|            |                       | ● 유가족상속자금 1,000만원                                        |        |        |             |                                              |                                                                                                          |
|            | 일반인 경우                | ● 유족연금<br>매년 90만원                                        |        |        |             |                                              |                                                                                                          |
|            |                       | ● 보험료 납입면제                                               |        |        |             |                                              |                                                                                                          |

#### 확정배당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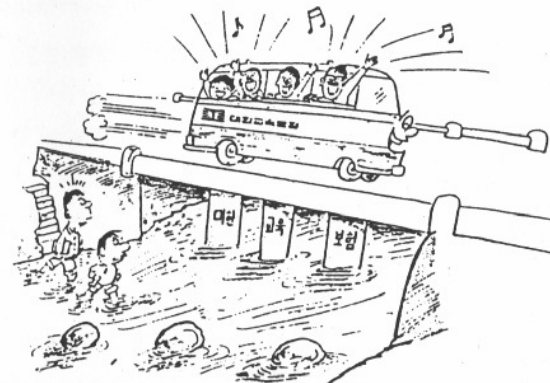
이 보험의 예정이율(7.5%) 이 은행의 1년단기 정기예금 이율+0.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여 드리는 금액입니다.

#### 물가보상배당금 지급

확정배당이율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상하여 드리는 금액입니다.

#### 이익배당금 지급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니다.



## 약관 주요내용 설명

### 1. 계약의 효력

(부부금슬보험(2종)약관 제 3조 참조)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부터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승낙을 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승낙전의 경우에도 재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격 피보험체 및 진단이 끝난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집니다.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 2. 계약의 무효

(부부금슬보험(2종)약관 제6조 참조)

법률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18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등.



###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부금슬보험(2종)약관 제10조 참조)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용 및 선량한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가. 2년 이내 피보험자의 자살 또는 자해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나.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케 하거나 장애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 4. 가입자가 회사에 계약전 알릴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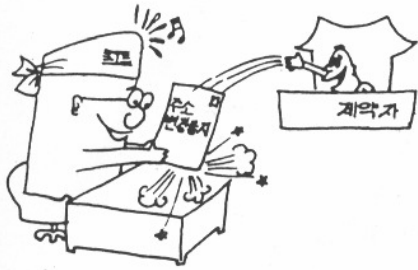
(부부금슬보험(2종)약관 제 12조 참조)

생명보험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서 상호보장하여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

보험가입시 처음부터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이나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계약하면 공평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피보험자의 과거의 병력이나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관하여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5. 주소 변경통지

(부부금슬보험(2종)약관 제 15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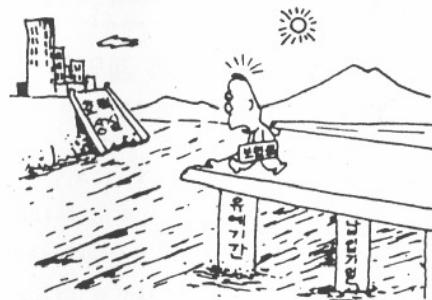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6.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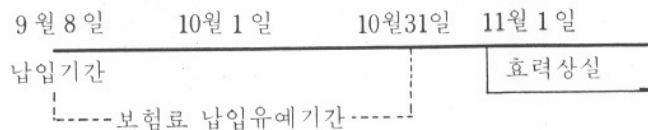
(부부금슬보험(2종)약관 제16조 참조)

계약자는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늦어도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유예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유예기간의 만료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며 계약의 효력상실 상태에서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도해



## 7. 보험금 등 지급절차

(부부금슬보험(2종)약관 제 18조, 제 19조 참조)

가. 회사는 수익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소정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나.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급사유만 참조)

| 수령인                                                                                            | 구비서류<br>지급사유       | 보험증권<br>과최종납<br>입영수증 | 주 민<br>등 록 증 | 도 장<br>진 단 서 | 해 당<br>비 고                                                               |
|------------------------------------------------------------------------------------------------|--------------------|----------------------|--------------|--------------|--------------------------------------------------------------------------|
| 보험금<br>수익자                                                                                     | 만 기 · 생 존 시        | ○                    | ○            | ○            | 회사통장 발행시는 증권대신 통장사용                                                      |
|                                                                                                | 입 원 · 장 해 · 기<br>타 | ○                    | ○            | ○<br>(인감)    | ① 사망시 사망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추가<br>② 재해시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 경찰서장 확인서 추가) |
| 계약자                                                                                            | 해 약 시              | ○                    | ○            | ○            |                                                                          |
|                                                                                                | 대 출 시              |                      | ○            | ○            |                                                                          |
| (1)상기 해당서류, 수익자(단, 해약, 계약자대출은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사용 용도 명시) 및 위임장(인감도장)을 필히 지참<br>(2)대리수령인의 도장 및 주민등록증 |                    |                      |              |              |                                                                          |

※ 회사는 상기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8. 계약내용의 변경

(부부금슬보험(2종)약관 제21조 참조)

보험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계약자의 소득수준, 가족수, 기호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험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수익자 등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2년이상 유지된 대상계약에 대하여는 타보험으로의 보험종목 변경도 가능합니다.



생명보험에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1. 보험료 소득공제(소득세법 제61조의2)

근로소득자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중 소득공제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24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어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의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상속세 면세(상속세법 제 7조)

상속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700만원까지 상속세의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수축하금부 연금설계  
부부금슬보험약관

목 차

|                                 |    |
|---------------------------------|----|
|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 13 |
| 제 2조【종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13 |
| 제 3조【계약의 효력】                    | 13 |
| 제 3조의 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 14 |
| 제 3조의 3【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 14 |
| 제 4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 14 |
| 제 5조【대표자의 지정】                   | 14 |
| 제 6조【계약의 무효】                    | 14 |
| 제 7조【보험금 지급사유】                  | 15 |
| 제 8조【질병의 범위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       | 15 |
| 제 9조【배당금의 지급】                   | 16 |
|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6 |
| 제1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16 |
| 제12조【가입자가 회사에 계약전 알릴의무】         | 16 |
| 제12조의 2【계약 취소권의 행사 제한】          | 17 |
| 제13조【보험료의 납입】                   | 17 |
| 제1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17 |
| 제15조【주소변경통지】                    | 17 |
|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17 |
| 제17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18 |
| 제1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18 |
| 제19조【보험금등의 지급】                  | 18 |
| 제20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19 |
|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 19 |
| 제21조의 2【계약연령의 계산】               | 19 |
| 제2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19 |
| 제23조【계약자 대출】                    | 19 |
| 제23조의 2【손해배상의 처리】               | 19 |
| 제24조【분쟁의 조정】                    | 20 |
| 제24조의 2【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 20 |
| 제25조【관할법원】                      | 20 |
| 제26조【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 20 |
| 제27조【준거법】                       | 20 |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주된 피보험자 또는 제 2조에 해당하는 주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이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청약철회(請約撤回)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주된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로서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종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보험의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 1항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계약의 경우에 이후 제 1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의 체결후에 제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 3 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보험료를 받은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로 소급(溯及)하여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 현재,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적격피보험체(適格被保險體)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立證)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피보험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진단이 끝난 여부에 관계없이 제 1회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서 가입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을 집니다.

④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단, 제 7조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및 생존연금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및 생존연금 지급이 완료된 후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 3 조의 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계약자의 계약체결의사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서 사용한 회사(대리점, 영업소, 영업국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 기재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중요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 3 조의 3【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인등이 청약서에서 잘못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그러나 자필서명란의 필적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4 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 ① 회사가 제 1회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의 이율(이하 “정기예금금리”라 합니다)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② 무진단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청약시에 제 1회보험료를 납입하고 청약일 또는 제 1회보험료영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청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일이 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 내에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 이 경우 반환지급기일을 경과하는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정기예금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제 5 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제 6 조【계약의 무효】

- ① 다음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 제 7 조【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주피보험자가 별표 1에서 정하는 제 1보험기간중 사망(이하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를 포함합니다)하였거나 별표 3에서 정하는 제 1급장해(이하 “고도의 장해(高度의 障害)”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 1참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드립니다.
2.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별표 1에서 정하는 제 2보험기간동안 살아 있을 때에는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 1참조)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생존연금의 지급은 제 1호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제 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사망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제 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주피보험자가 만60세, 만70세, 만77세, 만88세, 만99세 각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보험금지급기준표”(별표 1참조)에 따라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장수축하금의 지급은 제 1호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주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사망하였거나 별표 3에서 정하는 제 1급 내지 제 3급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6. 주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제 8조 제 1항에 정한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제 8조 제 2항에 정한 장소를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할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하였을 때에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
| 4일~30일 입원시 :  | 1개월분의 보험료 납입면제  |
| 31일~60일 입원시 : | 2개월분의 보험료 납입면제  |
| 61일~90일 입원시 : | 3개월분의 보험료 납입면제  |
| 91일 이상 입원시 :  | 12개월분의 보험료 납입면제 |
7. 제 1호, 제 3호 및 제 5호의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여부를 결정합니다.
8. 생존연금 지급개시일에 회사는 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제 2호 및 제 4호에 의한 생존연금 및 장수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 생존연금 개시일의 행일준비금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리고 제 2호 및 제 4호에 의한 생존연금 및 장수축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 8 조【질병의 범위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 4에

분류된 재해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 규정된 대한민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 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 9 조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니다.

#### 제 1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 사망위로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주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고도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주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고도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유족연금, 사망위로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주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고도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 ② 회사는 종피보험자가 제 1항중 한가지의 사유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위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제 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드리지 않습니다.

#### 제 11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물가가 급등하거나 사망 또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제 12 조 【가입자가 회사에 계약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 ③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 제 12 조 의 2【계약취소권의 행사 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는 등의 사기의사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 13 조 【보험료의 납입】

-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 제 14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7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 15 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

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재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을 적용합니다.

#### 제 17 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부활을 청약하는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는 제 1조 제 2항, 제 3조, 제 4조 및 제 1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 18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의 호적등본(생존연금, 일시보험금의 경우)
4. 입원증명서(입원의 경우)
5. 보험증권
6.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7.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 19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 18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유족연금, 생존연금, 사망위로금, 장수축하금,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 조사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유족연금, 생존연금, 사망위로금, 장수축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유족연금, 생존연금, 사망위로금, 장수축하금,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유족연금, 생존연금, 사망위로금, 장수축하금,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③ 제 7조의 경우에 당해년도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유족연금, 생존연금, 사망위로금, 장수축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제 10조 제 3항, 제 12조 제 3항, 제 16조 제 1항, 제 21조 제 3항 및 제 22조)은 이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별첨 “해약환급금 예시표”참조)

#### 제 20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7조 제 1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사망위로금, 재해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19조 규정에 의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에금금리로 부리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미지급기간이 1년미만인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해당기간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 제 21 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19조 제 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④ 계약자가 제 1항 제 4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 21 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을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 제 22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 제 23 조 【계약자 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23 조의 2 【손해배상의 처리】

회사는 보험모집과정에서 모집인 및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배상처리를 사업방법서, 보험업법, 기타 관계법률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제 24 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24 조 의 2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보험보증기금 운영규정 제 7조에 의거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보험료 납부 명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일정금액의 범위(약관에서 정한 금액, 1인당 최고한도 5천만원)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 2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제 26 조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 드립니다.

#### 제 27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별첨】

#### 해약환급금 예시표

#### 10년형

(남자)

| 구분<br>경과기간 | 55세연금지급개시 |         | 60세연금지급개시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개월        | 5,170     | 0       | 3,770     | 0       |
| 6개월        | 31,020    | 0       | 22,620    | 0       |
| 1 년        | 62,040    | 20,500  | 45,240    | 4,210   |
| 3 년        | 186,120   | 131,230 | 135,720   | 78,290  |
| 5 년        | 310,200   | 263,130 | 226,200   | 167,210 |
| 7 년        | 434,280   | 408,890 | 316,680   | 262,320 |
| 9 년        | 558,360   | 567,450 | 407,160   | 360,840 |

(여자)

| 구분<br>경과기간 | 55세연금지급개시 |         | 60세연금지급개시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개월        | 4,820     | 0       | 3,350     | 0       |
| 6개월        | 28,920    | 0       | 20,100    | 0       |
| 1 년        | 57,840    | 19,740  | 40,200    | 2,520   |
| 3 년        | 173,520   | 129,440 | 120,600   | 73,670  |
| 5 년        | 289,200   | 261,120 | 201,000   | 160,490 |
| 7 년        | 404,880   | 407,090 | 281,400   | 254,200 |
| 9 년        | 520,560   | 565,780 | 361,800   | 351,810 |

종신형

(남자)

| 구분<br>경과기간 | 55세연금지급개시 |         | 60세연금지급개시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개월        | 6,810     | 0       | 4,500     | 0       |
| 6개월        | 40,860    | 5,080   | 27,000    | 0       |
| 1 년        | 81,720    | 40,150  | 54,000    | 12,870  |
| 3 년        | 245,160   | 195,050 | 162,000   | 106,410 |
| 5 년        | 408,600   | 378,700 | 270,000   | 218,130 |
| 7 년        | 572,040   | 585,390 | 378,000   | 340,080 |
| 9 년        | 735,480   | 816,050 | 486,000   | 470,370 |

(여자)

| 구분<br>경과기간 | 55세연금지급개시 |         | 60세연금지급개시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개월        | 6,340     | 0       | 4,020     | 0       |
| 6개월        | 38,040    | 3,910   | 24,120    | 0       |
| 1 년        | 76,080    | 37,820  | 48,240    | 10,610  |
| 3 년        | 228,240   | 187,980 | 144,720   | 99,850  |
| 5 년        | 380,400   | 366,640 | 241,200   | 207,690 |
| 7 년        | 532,560   | 567,290 | 337,680   | 325,850 |
| 9 년        | 684,720   | 789,760 | 434,160   | 452,000 |

#### 【별표 1】

#### 보험금지급기준표

#### 가. 보험의 세목별 보험기간 구분

| 보험의 세목         | 제1보험기간                                      | 제2보험기간                    |
|----------------|---------------------------------------------|---------------------------|
| 45세형<br>부부금슬보험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가 만 45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br>해당일 전까지 | 제 1보험기간<br>종료후부터 종<br>신까지 |

| 보험의 세목         | 제 1보험기간                                     | 제 2보험기간 |
|----------------|---------------------------------------------|---------|
| 50세형<br>부부금슬보험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가 만50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br>해당일 전까지  | ◇       |
| 55세형<br>부부금슬보험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가 만 55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br>해당일 전까지 | ◇       |
| 60세형<br>부부금슬보험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가 만 60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br>해당일 전까지 | ◇       |
| 65세형<br>부부금슬보험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가 만 65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br>해당일 전까지 | ◇       |
| 70세형<br>부부금슬보험 |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가 만 70세에 달하는 해의 계약<br>해당일 전까지 | ◇       |

#### 나. 유족연금 지급기준

- 1) 주피보험자가 제 1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매년 보험사고 발생해당일에 유족연금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 2보험기간이후 10년까지는 종피보험자 생사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며 그 이후는 종피보험자 생존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매년 보험사고 발생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신까지 지급합니다.
- 2) 회사는 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제 1호에 의한 장래에 지급될 유족연금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생존연금 지급기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개시연금 : 연금개시연령의 계약해당일에  
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2인공존시 : 보험가입금액의 15%  
나. 주피보험자 1인 생존시 : 보험가입금액의 9%
2. 2차년도이후 10차년도까지 : 2인공존시는 2인공존시 개시연금액,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1인생존시는 주피보험자 1인생존시 개시연금액과 동일액 단, 연금개시후 10년이내에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10차년도까지 1인생존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종신형의 11차년도 이후 : 2인공존시는 2인공존시 10차년도연금액,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1인생존시는 주피보험자 1인생존시의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액

#### 라. 장수축하금 지급기준

주피보험자가 만60세, 만70세, 만77세, 만88세, 만99세 각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만 60세 계약해당일 : 보험가입금액의 10%를 환갑축하금으로 지급(단, 만 57세 이하 가입자에 한함)
2. 만 70세 계약해당일 : 보험가입금액의 20%를 고회축하금으로 지급
3. 만 77세 계약해당일 : 보험가입금액의 30%를 회수축하금으로 지급
4. 만 88세 계약해당일 : 보험가입금액의 40%를 미수축하금으로 지급
5. 만 99세 계약해당일 :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백수축하금으로 지급

#### 【별표 2】

####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 30호, 1979. 1. 1 시행)에 의한 것임.

#### 분류항목

|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
| 1. 철도사고                                                                                                                                                                                                             | E800~E807                                         |
| 2. 자동차 교통사고                                                                                                                                                                                                         | E810~E819                                         |
| 3. 자동차 비교통사고                                                                                                                                                                                                        | E820~E825                                         |
| 4. 기타도로교통기관사고                                                                                                                                                                                                       | E826~E829                                         |
| 5. 수상교통기관사고                                                                                                                                                                                                         | E830~E838                                         |
|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 E840~E845                                         |
|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케이블카, 곤돌라 등)                                                                                                                                                                                 | E846~E848                                         |
|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br>다음 사항은 제외한다.<br>1)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br>2) 질병의 진단치료의 목적                                                                                                                         | E850~E858                                         |
|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br>다음 사항은 제외한다.<br>1) 세제, 유지 및 구리스용제, 기타의 화학물질 접촉에 의한 피부염<br>2) 살모넬라성(Salmonella 성)식중독<br>3) 세균성(포도구균성 Botulinus성)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br>4) 알레르기성, 식이성(음식물에 의한)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 E860~E869                                         |
| 10. 불의의 추락                                                                                                                                                                                                          | E880~E888                                         |
|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 E890~E899                                         |
|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br>다음 사항은 제외한다.<br>1) 파도의 고온<br>2) 고기압, 저기압 및 기압의 변화<br>3) 여행 및 운동<br>4) 굶주림, 갈증, 불량환경노출 및 방치중의 굶주림, 갈증                                                                                    | E900~E909<br>(E901)<br>(E902)<br>(E903)<br>(E904) |
| 13. 기타 불의의 사고<br>다음 사항은 제외한다.<br>1) 파로 및 격렬한 운동                                                                                                                                                                     | E916~E928<br>(E927)                               |
| 14. 침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br>다음 사항은 제외한다.<br>1)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삼킴장애 또는 정신신경 장애상태가 있는 사람의 음식물흡입 또는 삼킴에 의한 막힘 및 질식<br>2)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삼킴에 의한 막힘 및 질식                                                                   | E910~E915<br>(E912)                               |
| 1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 E870~E876                                         |

|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br>1) 질병의 진단 목적<br>2) 질병의 치료 목적<br>16.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br>17.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br>18.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br>19. 전염병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br>20.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E960~E969<br>E970~E978<br>E990~E999 |

【별표 3】

장애등급분류표

| 등 급 | 신 체 장 해                                                                                                                                                                                                                                                                                                                                                                    |
|-----|----------------------------------------------------------------------------------------------------------------------------------------------------------------------------------------------------------------------------------------------------------------------------------------------------------------------------------------------------------------------------|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br>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br>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br>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br>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br>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제2급 |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3.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급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br>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br>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br>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br>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br>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br>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br>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br>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br>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br>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br>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등 급 | 신 체 장 해                                                                                                                                                                                                                                                               |
|-----|-----------------------------------------------------------------------------------------------------------------------------------------------------------------------------------------------------------------------------------------------------------------------|
|     | 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br>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br>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한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잃었을 때<br>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장애등급 분류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애”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口, ㄴ, ㄷ), 치설음(ㄴ, ㄷ, ㄱ), 구개음(ㄱ, ㄴ), 후두음(ㅇ, ㅎ)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헤르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9.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 6, 7, 8, 9 제2급의 1, 2, 3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대상이 되는 질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분 류 하 목                  | 국제기본분류번호 |
|--------------------------|----------|
| I.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001~139  |
| II. 신생물                  | 140~239  |
| III. 내분비, 영양및 대사질환과 면역장애 | 240~279  |
| IV.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 280~289  |
| VI.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        | 320~389  |
| VII. 순환기계의 질환            | 390~459  |
| VIII. 호흡기계의 질환           | 460~519  |
| IX. 소화기계의 질환             | 520~579  |
| X.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580~629  |
| X I. 임신, 출산 및 산욕의 합병증    | 630~679  |
| X 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680~709  |
| X II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710~739  |
| X V. 주산기에 관련된 일정한 병태     | 760~779  |
| X VI. 증상, 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   | 780~799  |
| X VII. 손상 및 중독           | 800~999  |

주: V. 정신장애(290~319), XIV. 선천이상(740~759), 치의 보철과 분만전 간호 및 분만후 관찰(V. 22~24, 52. 3, 58. 5)에 의한 입원은 이 보험의 입원시 보험료 납입면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부부금슬보험 암사망특약약관

## 목 차

|                               |    |
|-------------------------------|----|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29 |
| 제 2조 【피보험자의 정의】               | 29 |
| 제 3조 【특약의 무효】                 | 29 |
| 제 4조 【보험금 지급 사유】              | 29 |
| 제 5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29 |
| 제 6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 29 |
| 제 7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30 |
| 제 8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30 |
| 제 9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30 |
| 제1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30 |
| 제11조 【보험금의 지급 및 해약환급금】        | 30 |
|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 31 |
| 제13조 【계약자 임의 해지】              | 31 |
| 제14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31 |

###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이하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를 포함합니다) 하였거나 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1급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 2 조 【피보험자의 정의】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 3 조 【특약의 무효】

- ① 책임개시일 전일이전의 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암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그러나 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 4 조 【보험금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1조에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암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제 5 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참조)을 말합니다.
- ② 암사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에 정한 대한민국내의 병원(치과병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병리조직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X선, 내시경 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 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 6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7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9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10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입원증명서(입원의 경우)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1 조 【보험금의 지급 및 해약환급금】**

- ① 회사는 제10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③ 제4조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제6조, 제8조,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은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별첨 "해약환급금예시표" 참조)

**제 12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3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4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첨】**

**【해약환급금 예시표】**

(남자)

기준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피보험자연령 : 40세  
보험료 납입방법 : 전기월납

| 구 분 | 55 세 형 |       | 60 세 형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개월 | 250    | 0     | 300    | 0      |
| 6개월 | 1,500  | 0     | 1,800  | 180    |
| 1 년 | 3,000  | 670   | 3,600  | 1,360  |
| 3 년 | 9,000  | 3,670 | 10,800 | 5,900  |
| 5 년 | 15,000 | 6,360 | 18,000 | 10,400 |
| 7 년 | 21,000 | 8,350 | 25,200 | 14,520 |
| 9 년 | 27,000 | 9,390 | 32,400 | 18,080 |

(여자)

| 구 분 | 55 세 형 |       | 60 세 형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개월 | 150    | 0     | 180    | 0     |
| 6개월 | 900    | 0     | 1,080  | 0     |
| 1 년 | 1,800  | 0     | 2,160  | 100   |
| 3 년 | 5,400  | 1,260 | 6,480  | 2,210 |
| 5 년 | 9,000  | 2,670 | 10,800 | 4,390 |
| 7 년 | 12,600 | 3,660 | 15,120 | 6,270 |
| 9 년 | 16,200 | 4,020 | 19,440 | 7,670 |

【별표 1】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제5조에 규정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세계보건기구(WHO) 제8회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
| 입술(口脣)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40  |
| 혀(舌)의 악성신생물                            | 141  |
| 침샘(唾液腺)의 악성신생물                         | 142  |
| 잇몸(齒肉)의 악성신생물                          | 143  |
| 구강저위부(口腔低位部)의 악성신생물                    | 144  |
| 기타 및 부위불명의 구강의 악성신생물                   | 145  |
| 중인두(中咽頭)의 악성신생물                        | 146  |
| 비인두(鼻咽頭)의 악성신생물                        | 147  |
| 하인두(下咽頭)의 악성신생물                        | 148  |
| 부위불명의 인두의 악성신생물                        | 149  |
| 식도(食道)의 악성신생물                          | 150  |
| 위(胃)의 악성신생물                            | 151  |
| 소장(小腸)의 악성신생물(십이지장 포함)                 | 152  |
| 대장(大腸)의 악성신생물(직장(腸)은 제외)               | 153  |
| 직장(直腸) 및 직장S상 결장이행부(結腸移行部)의 악성신생물      | 154  |
| 원발(原發)로 명시된 간장(肝臟) 및 간내담관(肝內膽管)의 악성신생물 | 155  |
| 담낭(膽囊) 및 담관(膽管)의 악성신생물                 | 156  |
| 췌장(胰臟)의 악성신생물                          | 157  |
| 복막(腹膜) 및 후복막조직(後腹膜組織)의 악성신생물           | 158  |
| 원인 및 상태불명의 소화기(消化器)의 악성신생물             | 159  |
| 비(鼻), 비강(鼻腔), 중이(中耳) 및 부비강(副鼻腔)의 악성신생물 | 160  |
| 후두(喉頭)의 악성신생물                          | 161  |
|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및 폐(肺)의 악성신생물         | 162  |
| 기타 및 원인 상태불명의 호흡기(呼吸器) 악성신생물           | 163  |
| 골(骨)의 악성신생물                            | 170  |
| 결합직(結合織) 및 기타 연부조직(軟部組織)의 악성신생물        | 171  |
| 피부의 악성신생물                              | 172  |
|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173  |
| 유방(乳房)의 악성신생물                          | 174  |
| 자궁경부(子窮頸部)의 악성신생물                      | 180  |
| 융모상피종(絨毛上皮腫)                           | 181  |
| 기타 자궁의 악성신생물                           | 182  |
| 난소(卵巢)·난관(卵管) 및 자궁광간막(子宮廣間膜)의 악성신생물    | 183  |
| 기타 및 원인상태불명의 여성 성기의 악성신생물              | 184  |
| 전립선(前立腺)의 악성신생물                        | 185  |
| 고환(睪丸)의 악성신생물                          | 186  |
| 기타 및 원인상태불명의 남성성기(男性性器)의 악성신생물         | 187  |
| 방광(膀胱)의 악성신생물                          | 188  |

|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
| 기타 및 원인상태불명의 비뇨기(泌尿器)의 악성신생물 | 189  |
| 눈(眼)의 악성신생물                  | 190  |
| 뇌(腦)의 악성신생물                  | 191  |
| 기타의 신경계 악성신생물                | 192  |
| 갑상선(甲狀腺)의 악성신생물              | 193  |
| 기타의 내분비선(內分泌腺)의 악성신생물        | 194  |
| 기타의 불명확한 부위(部位)의 악성신생물       | 195  |
| 속발(續發) 및 원인상태불명의 임파절의 악성신생물  | 196  |
| 속발성(續發性)의 호흡기 및 소화기의 악성신생물   | 197  |
| 기타 속발성 악성신생물                 | 198  |
| 부위(部位)가 명시되지 않은 악성신생물        | 199  |
| 임파육종(肉腫) 및 세망육종(細網肉腫)        | 200  |
| 호지킨씨병                        | 201  |
| 기타의 임파조직의 신생물                | 202  |
|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 203  |
| 임파성 백혈병(白血病)                 | 204  |
| 골수성 백혈병(骨髓性白血病)              | 205  |
| 단구성 백혈병(單球性白血病)              | 206  |
| 기타 및 원인상태불명의 백혈병             | 207  |
| 진성 적혈구 증가증(眞性赤血球增加症)         | 208  |
| 골수선유증(骨髓腺維症)                 | 209  |

제9회 이후 수정국제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2】

장해등급분류표

| 등 급 | 신 체 장 해                                                                                                                                                                                                                                                                                                                                                                                                                                                                      |
|-----|------------------------------------------------------------------------------------------------------------------------------------------------------------------------------------------------------------------------------------------------------------------------------------------------------------------------------------------------------------------------------------------------------------------------------------------------------------------------------|
| 제1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li> <li>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li> <li>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li> <li>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li> <li>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li> <li>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li> <li>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li> <li>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li> <li>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li> </ol> |

(장해등급분류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3.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口, ㅁ, ㅂ), 치설음(ㄴ, ㄷ, ㄱ), 구개음(ㄱ, ㅋ), 후두음(ㅇ, ㆁ)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메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4.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목·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부부금슬보험 유가족상속특약약관

### 목 차

|                               |    |
|-------------------------------|----|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36 |
| 제 2조 【피보험자의 정의】               | 36 |
| 제 3조 【보험금 지급사유】               | 36 |
| 제 4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 36 |
| 제 5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36 |
| 제 6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36 |
| 제 7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36 |
| 제 8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37 |
| 제 9조 【보험금의 지급 및 해약환급금】        | 37 |
| 제10조 【특약내용의 변경】               | 37 |
|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37 |
| 제12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37 |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이하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를 포함합니다)하였거나 또는 별표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1급장해(이하 “고도의 장해(高度의 障害)”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정의】**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보험금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주계약의 생존연금 지급개시연령의 계약해당일에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유가족상속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7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8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이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3. 보험증권
4. 입원증명서(입원의 경우)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9 조 【보험금의 지급 및 해약환급금】**

- ① 회사는 제8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③ 제3조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제4조, 제6조,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은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별첨 “해약환급금예시표”참조)

**제 10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1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①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2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첨】

해약환급금예시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피보험자연령 : 40세  
보험료 납입방법 : 전기월납

(남자)

| 구 분 | 55 세 형 |        | 60 세 형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개월 | 530    | 0      | 540    | 0      |
| 6개월 | 3,180  | 0      | 3,240  | 0      |
| 1 년 | 6,360  | 0      | 6,480  | 0      |
| 3 년 | 19,080 | 5,600  | 19,440 | 8,050  |
| 5 년 | 31,800 | 14,900 | 32,400 | 19,970 |
| 7 년 | 44,520 | 22,070 | 45,360 | 30,940 |
| 9 년 | 57,240 | 25,010 | 58,320 | 39,360 |

(여자)

| 구 분 | 55 세 형 |        | 60 세 형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개월 | 280    | 0      | 290    | 0      |
| 6개월 | 1,680  | 0      | 1,740  | 0      |
| 1 년 | 3,360  | 0      | 3,480  | 0      |
| 3 년 | 10,080 | 0      | 10,440 | 500    |
| 5 년 | 16,800 | 4,790  | 17,400 | 7,190  |
| 7 년 | 23,520 | 8,900  | 24,360 | 12,960 |
| 9 년 | 30,240 | 10,110 | 31,320 | 16,490 |

【별표 1】

장해등급 분류표

부부금슬보험 암사망특약 약관 별표 2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재해상해특약약관

목 차

|                                       |    |
|---------------------------------------|----|
|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 40 |
|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                | 40 |
| 제 3 조 【중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       | 40 |
| 제 4 조 【보험금 지급사유】 .....                | 40 |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41 |
|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 41 |
|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 42 |
| 제 8 조 【효력 상실된 특약의 부활】 .....           | 42 |
| 제 9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 42 |
| 제 10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 42 |
|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               | 42 |
|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 42 |
|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 43 |

이 특약의 약관은 본인형, 배우자형, 가족형중 본인형 약관 내용만을 적용합니다.

####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본인형, 배우자형, 가족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특약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 4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금의 총 한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에서는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배우자형에서는 제 2항의 제 1호에 정한자로, 가족형에서는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에 정한자(이하 “배우자형, 가족형의 피보험자”를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제 1조 제 1항에서 선택한 형에 따라 본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②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관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2. 주피보험자의 만 22세 이하 미혼 자녀

#### 제 3 조 【종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 2조 제 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특약의 체결후 제 2조 제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 4 조 【보험금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별표 2에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이하 “재해”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상의 2급 내지 6급(이하 “장해”라 합니다)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 부터 90일이 지난날 현재 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② 제 1항에 의하여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

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급여금만을 드립니다.

- ③ 제 2항에 규정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 ④ 제 2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 3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3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이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 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⑤ 장해로 인한 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본인형 및 배우자형에서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가족형의 배우자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42%, 가족형의 자녀는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8%로 합니다.
- ⑥ 배우자형 또는 가족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내지 제 5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 1조 제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드립니다.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장해상태로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장해상태로 되게 하였을 경우
- ② 회사는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1항 제 2호와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 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 1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계산방법에 따라서 제 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년도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급여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 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급여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③ 그 특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제 7조, 제11조 제 2항, 제 12조 제 1항)에는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다만, 청약시에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 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급여금 지급 기준표**

| 장해등급 | 본 인 형         |
|------|---------------|
| 2 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
| 3 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 |
| 4 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0% |
| 5 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 |
| 6 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

**【별표 2】**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부부금슬보험(2종)약관【별표 2】의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와 동일

**【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 등 급 | 신 체 장 해                                                                                                                                                                                                                                                                                                                                                                                      |
|-----|----------------------------------------------------------------------------------------------------------------------------------------------------------------------------------------------------------------------------------------------------------------------------------------------------------------------------------------------------------------------------------------------|
| 제2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li> <li>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li> <li>3.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1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li> <li>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li> </ol>                                                                                                  |
| 제3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li> <li>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li> <li>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li> <li>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li> <li>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li> <li>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li> <li>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li> <li>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li> <li>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li> </ol> |
| 제4급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li> <li>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li> <li>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li> <li>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li> <li>5.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li> </ol>                                                                                           |

| 등 급 | 신 체 장 해                                                                                                                                                                                                                                                                                                                                                                                                                        |
|-----|--------------------------------------------------------------------------------------------------------------------------------------------------------------------------------------------------------------------------------------------------------------------------------------------------------------------------------------------------------------------------------------------------------------------------------|
|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br>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br>9. 첫째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br>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
| 제5급 | 1.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br>2.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br>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br>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br>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br>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7.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8.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br>9.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br>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제6급 |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br>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br>3.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br>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br>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br>8.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br>9.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애등급 분류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애”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적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口, ㅂ, ㅍ), 치설음(ㄴ, ㄷ, ㄱ), 구개음(ㅅ, ㅌ), 후두음(ㅇ, ㅎ)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것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애”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목·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경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

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13. “손가락의 장애”

####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말절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4. “발가락의 장애”

####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절골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5.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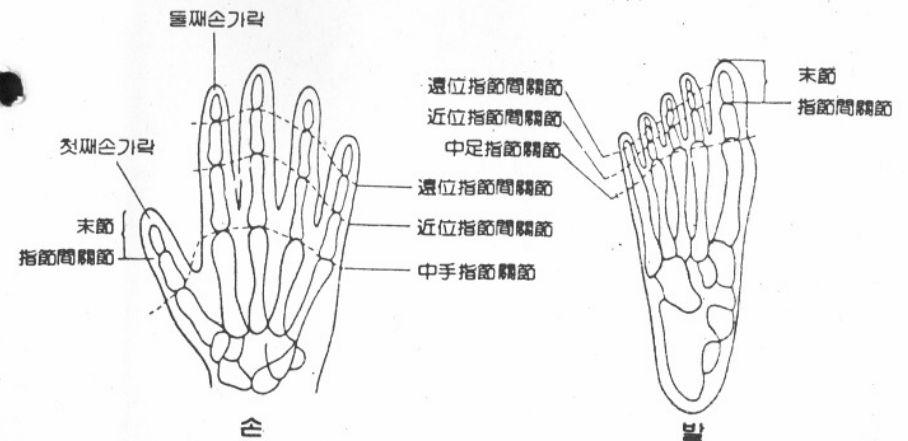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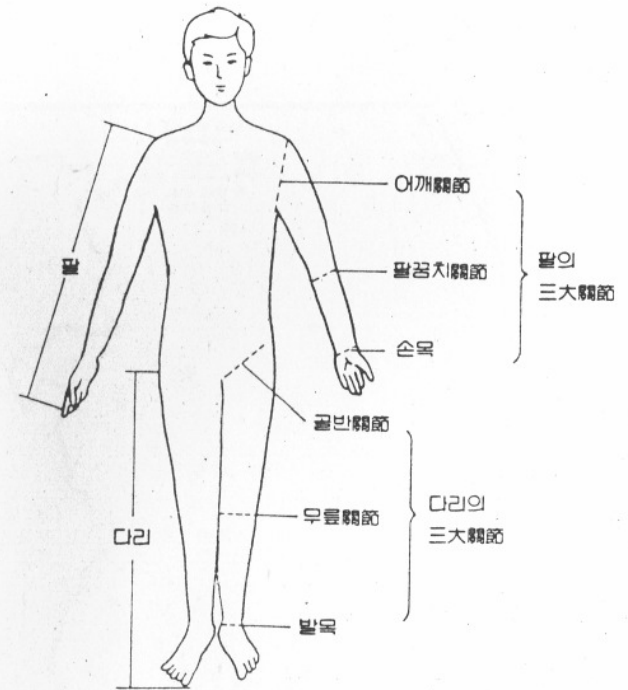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 6, 7, 8, 9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신체부위 설명도



# MEMO

“대한교육보험은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 서울  |          |
|-----|----------|
| 광화문 | 752-4969 |
| 영광동 | 887-7987 |
| 지동  | 333-7396 |
| 지동  | 735-2748 |
| 지동  | 588-7451 |
| 지동  | 755-2725 |
| 지동  | 732-6465 |
| 지동  | 444-8611 |
| 지동  | 762-5436 |
| 지동  | 907-4542 |
| 지동  | 678-0181 |
| 지동  | 793-5021 |
| 지동  | 842-8553 |
| 지동  | 737-6876 |
| 지동  | 540-1750 |
| 지동  | 698-4451 |
| 지동  | 423-0017 |
| 지동  | 549-4922 |
| 지동  | 923-0486 |
| 지동  | 926-2902 |
| 지동  | 476-9124 |
| 지동  | 488-5020 |
| 지동  | 712-4281 |
| 지동  | 993-4660 |
| 지동  | 733-6390 |
| 지동  | 737-7322 |
| 지동  | 752-0192 |
| 지동  | 737-6255 |

| 부산 |          |
|----|----------|
| 부산 | 864-3931 |
| 부산 | 805-5844 |
| 부산 | 803-3848 |
| 부산 | 864-2371 |
| 부산 | 462-1485 |
| 부산 | 647-0889 |
| 부산 | 462-9611 |
| 부산 | 553-7810 |
| 부산 | 44-5708  |

| 인천 |          |
|----|----------|
| 인천 | 421-2381 |
| 인천 | 421-2373 |
| 인천 | 868-8102 |

| 대구 |          |
|----|----------|
| 대구 | 425-2302 |
| 대구 | 625-9601 |
| 대구 | 625-8301 |
| 대구 | 252-3930 |
| 대구 | 625-8890 |



| 경기도 |          |
|-----|----------|
| 경기도 | 2-2388   |
| 경기도 | 32-6417  |
| 경기도 | 753-2794 |
| 경기도 | 42-9714  |
| 경기도 | 43-6441  |
| 경기도 | 63-6011  |
| 경기도 | 439-7984 |
| 경기도 | 45-4638  |

| 강원도 |         |
|-----|---------|
| 강원도 | 3-8922  |
| 강원도 | 2-2933  |
| 강원도 | 52-5044 |

| 충남 |          |
|----|----------|
| 충남 | 253-8991 |
| 충남 | 252-9418 |
| 충남 | 2-8593   |
| 충남 | 32-5956  |
| 충남 | 253-5701 |
| 충남 | 255-3895 |

| 충북 |         |
|----|---------|
| 충북 | 66-2751 |
| 충북 | 2-8126  |

| 전남 |          |
|----|----------|
| 전남 | 222-0765 |
| 전남 | 52-9973  |
| 전남 | 2-1394   |
| 전남 | 526-3017 |
| 전남 | 2-1518   |
| 전남 | 73-2903  |
| 전남 | 527-9650 |

| 전북 |         |
|----|---------|
| 전북 | 75-7866 |
| 전북 | 3-5411  |
| 전북 | 4-1761  |

| 경남 |         |
|----|---------|
| 경남 | 53-0451 |
| 경남 | 84-3359 |
| 경남 | 2-9251  |
| 경남 | 75-2711 |
| 경남 | 3-1642  |
| 경남 | 42-0727 |

| 경북 |         |
|----|---------|
| 경북 | 2-8511  |
| 경북 | 74-0814 |
| 경북 | 42-1036 |
| 경북 | 2-5741  |

| 제주도 |         |
|-----|---------|
| 제주도 | 22-3670 |